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소형 가전제품의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내용(안)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편집자 주 -

주요 내용

가.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이 발생하는 분말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4조제2항 별표1)

(1) 현행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은 분말제품의 특성인 다져짐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분말 세제류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으로 증가하는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현행 10% → 15%로 조정)

(3) 분말 세제류 제조업체의 건전한 기업활동 유도 및 포장방법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 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안 제8조제1항 별표3)

(1) 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 대상 품목에서 소형 가전제품(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발포 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 · 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 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제)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 중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단위제품 중 ‘세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제품	세제류	액상세제류	10% 이하	2차 이내
		분말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림 1] 순환형 유통 시스템과 3R 관계

현행	개정안
<p>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p> <p>3. (생략) ② (생략)</p> <p>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생략)</p>	<p>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제7조제2호 _____.</p>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_____ 제7조제3호 _____. ②·③ (현행과 같음)</p>